

의안번호	2219149
의 퇴 인	조정훈의원
회 답 일	2026.08.20.
추계번호	26C295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재학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02억 8,800만원, 2031년 113억 7,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41억 1,600만원(연평균 108억 2,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안 제16조의2 (이자의 면제)	10,288	10,547	10,815	11,091	11,374	54,116	10,823

주: 1. 가용 통계의 한계로 졸업자의 미취업에 따른 이자 면제 대상 누적과 이용자의 자발적인 원금 상환에 따른 대출잔액 감소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재정소요는 본 추계결과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2. 향후 경기 변동 및 고용 상황 등 요인에 따라 실제 대출 수요가 변동하는 경우 실제 재정소요는 본 추계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2제2항제7호 (이자의 면제)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제2항). 7. 고등교육기관(제3조제2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및 제3조제2호가목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대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6조의2제2항제7호 (이자의 면제)	○	· 대상자 수에 1인당 대출잔액과 대출금리를 곱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한국장학재단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대출 당시 학자금 지원구간¹⁾ 6구간 이하인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음²⁾

－ 이에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의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으로 603억 5,900만원이 편성됨

* [참고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예산 세부내역

1) 학자금 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된 구간값으로, 경계값은 아래와 같음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중위소득 비율	30%	50%	70%	90%	100%	130%	150%	200%	300%	－

자료: 한국장학재단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한편, 2026년 11월 20일 시행이 예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³⁾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범위를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로 확대함
- 개정안은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범위를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

□ 한국장학재단의 재정 구조 등을 고려하여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라 면제되는 대출이자액 전체로 함

- 현재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을 위해 발행한 재단채의 이자비용을 보전하고 있어 예산에 직접 반영되는 재정증가분은 재단의 수입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로 발행되는 재단채의 이자비용임
-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이자 면제액이 전액 국가재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에 소요되는 금액도 전액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연간 추가재정소요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인 수도권 소재 대학생 수에 1인당 대출잔액과 대출금리를 곱하여 추계함

-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 대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이자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자면제 추계 대상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구간 7·8구간 대학생으로 함
- 개정안은 학자금대출의 구체적인 이자 면제 범위를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본 추계서에 서는 이를 최대 상한인 8구간으로 가정하고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21660호, 2026.11.20. 시행 예정)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제3조제2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및 제3조제2호나목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대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개정안에 따라 7·8구간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학자금대출에 대한 추가 수요 발생으로 이자 면제 대상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효과를 전망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본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2026년 11월 20일이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자 수에 1인당 대출잔액과 대출금리를 곱하여 연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대상자 수)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 수에 학자금 지원구간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률을 곱하여 추정
 -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 수는 교육부가 2026년 공시한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 수에 최근 3년간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 수의 연평균 증감율(0.54%)을 적용하여 산출
 - 학자금 지원구간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률은 한국장학재단의 2026년 1학기 기준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 각각 7구간 10.63%, 8구간 11.81%로 하고, 추계기간 동안 해당 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

[표 2] 대상자 수 전망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7구간	66,422	66,780	67,140	67,502	67,866
8구간	73,803	74,201	74,601	75,003	75,407
합계	140,225	140,981	141,741	142,505	143,273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인당 대출잔액) 2026년 1학기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을 준용하되,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함

- 이자 면제 기간 내 채무자의 대출원금 상환에 따른 대출잔액 감소분은 전망에 한계가 있어 고려하지 않음

[표 3] 1인당 대출잔액 전망

(단위: 천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7구간	4,039	4,118	4,200	4,285	4,370
8구간	4,565	4,655	4,748	4,843	4,940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대출금리) 2021년 이후 연 1.7%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금리가 유지된다고 가정함

- 상술한 가정에 따라 산출한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02억 8,800만원, 2031년 113억 7,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41억 1,600만원(연평균 108억 2,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10,288	10,547	10,815	11,091	11,374	54,116	10,823
7구간	4,561	4,675	4,794	4,917	5,042	23,989	4,798
8구간	5,728	5,871	6,021	6,175	6,332	30,127	6,025

주: 1. 가용 통계의 한계로 졸업자의 미취업에 따른 이자 면제 대상 누적과 이용자의 자발적인 원금 상환에 따른 대출잔액 감소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재정소요는 본 추계결과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2. 향후 경기 변동 및 고용 상황 등 요인에 따라 실제 대출 수요가 변동하는 경우 실제 재정소요는 본 추계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가용 통계의 한계로 졸업자의 미취업에 따른 이자 면제 대상 누적과 이용자의 자발적인 원금 상환에 따른 대출잔액 감소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재정소요는 본 추계결과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향후 경기 변동 및 고용 상황 등 요인에 따라 실제 대출 수요가 변동하는 경우 실제 재정소요는 본 추계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재원 조달 비용 지원	186,274	176,563
이전연도 채권발행분	192,174	191,374
당해연도 채권발행분	32,589	32,970
이자면제 지원분	△38,489	△47,781
AI/SW분야 학업장려대출	—	2,923
이자면제 지원	38,489	47,781
군이자면제	529	495
기초·차상위 이자면제	5,547	4,917
다자녀 이자면제	17,731	18,287
중위소득 이하 등 이자면제	9,844	20,362
상환 유예자 이자면제	4,838	3,720
합계	224,763	227,267

자료: 교육부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